

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

제정 : 1998. 10. 08.
 개정 : 2015. 02. 06.
 개정 : 2016. 08. 05.
 개정 : 2016. 12. 09.
 개정 : 2017. 09. 29.
 개정 : 2018. 10. 05.
 개정 : 2019. 05. 03.
 개정 : 2019. 06. 07.
 개정 : 2020. 04. 03.

담당 : 교학팀(950-5405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적용)	제3조(정의)	제4조(자격)
제5조(연구년의 기간)	제6조(신청자격의 기산일)	제7조(전공별 제한)	제8조(의무)
제9조(운영위원회)	제10조(연구년 허가신청)	제10조의2(평가 및 추천)	제10조의3(연구년계획 변경)
11조(처우)	제11조의2(연구활동)	제12조(예외규정)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이 연구에만 전념하여 연구 성과를 높이고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수 연구년제를 규정.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2003.6.1.>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정의) 연구년이라 함은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직무의무 없이 국내외에서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.

제4조(자격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전임교원
2. 학과 별 제한 및 본 대학교 타 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임교원<개정2016.8.5.>
3. 삭제<2019.6.7.>
4. 삭제<2016.8.5.>

5. 신청 시 연구년 종료 후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전임교원<신설2018.10.5.>

제5조(연구년의 기간) 연구년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년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.
2. 연구년 기간 중 연구활동은 국외 연구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연구년의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의 연구 활동도 허가할 수 있다.
3. 상반기 연구년은 3월 1일에 하반기 연구년은 9월 1일에 시행한다.<개정2020.4.3.>
[전문개정18.10.5.]

제6조(신청자격의 기산일) ① 연구년 신청에 필요한 근속기간의 기산일은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발령 받은 날로 한다.

②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은 교원은 최근 연구년 종료 후 6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연구년을 받을 수 있다.
<개정2003.6.1.,2018.10.5.>

제7조(전공별 제한) 해당 전공별로 정상적인 수업 등을 위하여 연구년 교수의 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.<개정2003.6.1.>

1. 연구년 교원 수는 전 교원의 10% 내외로 한다.
2. 학과의 연구년 해당 교원 수는 1명을 넘지 않는다.
3.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(의무)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본 대학교에 복귀하여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6.1.,2015.2.6.>

②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보고서(서식 4)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2003.6.1.,2016.8.5.,2016.12.9.>

③ 연구년 결과논문은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를 완료하여야 한다.
<개정2003.6.1.,2016.12.9.,2017.9.29.>

④ 제8조 ①~③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연구년 기간 중 받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연봉 전액과 왕복 항공료 실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<개정 2003.6.1.,2016.12.9.,2018.10.5.>

제9조(운영위원회) 학술연구심의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에서 연구년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<개정2003.6.1.,2016.8.5.,2017.9.29.>

1. 연구년 교원의 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<개정2017.9.29.>
2. 삭제<2017.9.29.>
3. 삭제<2017.9.29.>

제10조(연구년 허가신청)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연구년 허가신청서(별지 제1-1호 서식), 교육·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(별지 제1-2호)와 연구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, 소속 학과 회의록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03.6.1.,2016.8.5.,2016.12.9.>

제10조의2(평가 및 추천) ① 연구년 교원의 선정은 연구업적(30%), 연구계획(20%), 교내봉사실적(20%), 재직년수(30%) 및 신장과 학교발전에의 공헌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.<신설2003.6.1.>

② 연구년 신청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위의 ①항의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심의하여 추천한다.<신설 2003.6.1.,2016.8.5.,2017.9.29.>

제10조의3(연구년계획 변경) ① 연구년 허가를 받은 자가 연구 수행기관과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년 계획 변경서(서식3)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2005.11.17.>

② 변경사유가 ①항의 주요 사항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총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.<신설2005.11.17.,2016.8.5.>

제11조(처우) ① 연구년제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그 기간 중에도 본교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며, 각종 수당을 제외한 연봉 전액을 지급 받는다.<개정2003.6.1.,2018.10.5.>

② 연구년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며 연구년 기간 중의 승진은 보류한다.<개정2003.6.1.>

③ 연구년 기간의 교원업적평가는 중간 수준으로 결정한다.<신설2003.6.1>

④ 연구년 기간은 교원승진에 요구되는 업적 계산시 제외한다.<신설2003.6.1.,개정2020.4.3.>

⑤ 국외연구년 게시일이 3월 1일인 경우 복귀 후 첫 업적평가는 연구년 이전 6개월과 이후 6개월로 평가한다.<개정2006.6.22.,2016.12.9.,2017.9.29.,2020.4.3.>

⑥ 연구년 논문과 그 외 연구업적은 다음 년도 업적평가에 포함한다.<개정 2006.6.22.,2019.5.3.,2020.4.3.>

⑦ 연구년 기간 중 재임용 신청은 복귀 후 신청하도록 하며, 임용기간도 1년 연장된다.<신설2016.12.9.>

⑧ 연구년 기간이 1년이고 국외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왕복항공료 실비를 지급한다.<신설2018.10.5.>

제11조의2(연구활동) 연구년 교원은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의 연구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타 대학에 출강 또는 타 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없다.<신설2003.6.1.>

제12조(예외규정) 총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개정2016.8.5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0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[별지 제1호 서식] (개정 2016.12.9., 2018.10.5.)

연구년 허가 신청서

소속(학과):	직위:	성명:	
임용년월일	년 월 일	근속재직기간	
과거 연구년 수혜사항	종류: 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		
신청 종류	연구년연구, 국내교류교수, 박사후과정(국내/국외), 교환교수, 국비해외연구, 초청연구, 파견, 기타(해당란에 O)		
연구기관	기관명		
	소재지		
	연락처		
연구년 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(총 개월)
6개월 연구년 신청사유	(6개월 연구년인 경우만 작성)		
연구년 기간 중 연락처	주소: 전화:		
이행 사항	“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”을 준수함		
첨부	연구계획서/ 교육·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/소속 학과 회의록		
위와 같이 연구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청인 (인)			
한국성서대학교 총장 귀하			

-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[별지1-2호 서식](신설2016.12.9.)

교육·연구 등 업적에 관한 보고서*

1. 특별한 교육 실적(새로운 강의 개발, 교수법 적용 등)
2. 연구업적 목록(제목, 연도, 게재학술지명)**
3. 학교 발전에 대한 기여 실적(학내 봉사(입학, 평가), 교내위촉, 특별수상 등)
4. 기타 업적

소 속(학과):

성 명: (인)

*교육·연구 등 업적은 연구년을 처음 신청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부터, 이전에 연구년을 수혜받은 교원은 마지막 연구년 종료 후부터 신청일까지의 업적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**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-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[별지2호 서식](개정2016.12.9.)

연구년 연구계획서

1. 연구과제명

(한 글)

(영 문)

2.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

3. 연구일정 및 세부계획

4.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동 방안

5. 기타 참고사항

소 속(학과):

성 명:

(인)

*비고: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, 연구결과물을 복귀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■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[별지3호 서식](개정16.12.9.)

연구년 계획 변경서

1. 변경사항 ; 연구과제명, 수행처(연구기관) 등

당 초	변 경

2. 변경사유

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소 속(학과):

성 명:

(인)

■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[별지4호 서식](신설2016.12.9.)

연구년 결과보고서

소속(학과):	직위:	성명:
연구기관(주소)		
연구년 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1. 연구과제명		
2. 연구결과 요약(연구계획서 내용과 상이 시 사유서 첨부)		
3. 연구결과 활용방안(발표예정_학술지포함)		
4. 건의 사항		

(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)

